

# 입법정보

- ◆ 법률 제정·개정 주요사항 및 타 시·도 조례 입법동향,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 법령 입법예고 사항은 [법제처\(입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법제처(입법예고) :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List.mo?mid=a10104010000>
  -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isOgYn=Y>



# 목 차



<b>I. 법령 제정·개정 동향</b> .....	<b>1</b>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	1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	2
3. 문화재보호법(개정) .....	5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 .....	7
5. 도로교통법(개정) .....	9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 .....	10
7.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개정) .....	12
8. 주차장법(개정) .....	14
<b>II. 다른 시·도 조례 입법동향</b> .....	<b>15</b>
1.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15
2. 울산광역시 소비자 기본 조례 .....	16
3. 전라북도 해양쓰레기 관리 조례 .....	17
4. 전라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	18
<b>III.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법제처)</b> .....	<b>19</b>
<b>IV. 국외 입법례(근로자의 정신건강보호)</b> .....	<b>41</b>

##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개정 및 시행 `20. 6. 2.]

소관부서 :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5)

### ■ 개정이유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및 성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아동·청소년을 ‘이용’ 하는 음란물의 의미로 가볍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는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용어로 변경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성착취·성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규모와 형태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 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그 용어를 변경함(제2조제5호).
-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제7조의2 신설).

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관한 죄의 형량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광고·소개하거나 구입·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제11조).

라. 관련 규정에서 벌금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조정함(제56조제1항).

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59조제1항)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개정 `20. 3. 4. 시행 `20. 6. 5. ]

소관부서 :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044-202-2505

### ■ 개정이유

- 최근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감염병위기 시 대국민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의 정보공개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권한을 강화하고, 역학조사관 규모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7조제2항제2호의2 신설).
- 나. 제1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사실을 보고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람에 대하여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3조제2항 및 제80조제2호의2 신설).
-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등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을 평가·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6조의2 신설).
- 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조사하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제17조).
- 마. 고위험병원체의 분리·이동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함(제21조제4항, 제22조제3항 후단, 제23조제6항, 제52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 신설).
-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제34조의2).

- 사.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제36조제1항 및 제67조제6호의3 신설).
-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외품·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상승이나 공급부족으로 국민건강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 그 의약외품·의약품 등의 수출이나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0조의3 및 제77조제3호 신설).
- 자.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격리·조사·진찰·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함(제42조제2항·제3항 및 제79조의3 신설).
- 차.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49조의2 신설).
- 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도록 함(제51조제1항 후단 신설).
- 타. 감염병 예방·방역·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방역관·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두는 역학조사관의 수를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확대함(제60조제1항 및 제60조의2제1항).
- 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환자 등의 위치정보를 경찰관서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보건의료기관에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의료인, 약사 등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경우 환자 등의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를 확인하도록 함(제76조의2).

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제76조의4 신설).

## 문화재보호법

3

[ 개정 및 시행 `20. 6. 9. ]

소관부서 :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042-481-4882

### ■ 개정이유

- 개인이 소유한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를 문화재청에 기증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매매업자 대상 교육’ 과 ‘문화재돌봄사업’ 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정문화재에 대한 낙서 등 훼손행위에 대한 원상 복구 명령 및 비용청구 등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문화재매매업자에 대한 교육 실시의 근거를 마련함(제15조의2 신설).
- 나.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는 문화재청에 해당 문화재를 기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기증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상 및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8 신설).
-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등의 보존을 위하여 상시적인 예방관리 사업인 문화재돌봄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제80조의3 신설).
- 라.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돌봄사업의 관리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문화재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함(제80조의4 신설).
- 마. 시·도지사는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재돌봄사업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제80조의5 신설).
- 바. 문화재청장은 지역문화재돌봄센터가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함(제80조의6 신설).
- 사.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종사자는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문화재돌봄사업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함(제80조의7 신설).
- 아. 지정문화재에 대한 낙서 등 훼손행위에 대한 원상 복구 명령 및 비용 청구 등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제82조의3 신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

[ 개정 및 시행 `20. 6. 9. ]

소관부서 : 행정안전부안전기획과-총괄, 044-205-4124

## ■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절차를 강화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국무총리로 격상되는 대규모 재난에 대하여 공동차장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긴급한 인명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시점을 우선 조치 후로 유예하는 한편,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이 갖추어야 할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재난대응 담당 공무원 등이 그 결과에 대한 문책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재난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시·도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제10조의4 신설).
- 나.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 등과 공동으로 차장이 되도록 함(제14조제5항 신설).
-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수습본부 또는 지역대책본부의 효율적인 재난상황의

관리와 재난 수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책지원본부를 둘 수 있도록 함(제17조의3 신설).

라.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은 인명구조, 응급조치 등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한 후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제2항 단서 신설).

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재난 등으로 인한 손해를 적절히 보상하도록 보상 한도를 정하는 등의 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76조의2 신설).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 등의 분석·평가 결과 해당 재난안전의무보험 등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권고,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운용에 대한 개선권고 등을 할 수 있음(제76조의3 신설).

사.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리·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제76조의4 신설).

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직원 및 긴급구조요원이 재난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명단 통보 및 징계 등 요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징계 등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함(제77조의2 신설).

## 도로교통법

5 [ 개정 및 시행 `20. 6. 9. ]

소관부서 : 경찰청(교통기획계(법제총괄)), 02-3150-2251

### ■ 개정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증가하는데 비해 이에 대한 운행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므로 이를 보완·개선하여 사회적·기술적 변화를 법률에 반영하고, 소방차 등의 경우에도 경찰용 긴급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경우 고속도로 등에서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초과속 운전의 경우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처벌을 강화하여 도로에서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하고, 이를 현행 교통체계에 편입함(제2조제8호 및 제9호, 제2조제19호의2 신설 등).
- 나. 소방차가 고속도로 등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경찰용 긴급자동차 및 소방차를 제외한 긴급자동차가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속도로 등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킬 수 있도록 함(제64조제6호의2 및 제6호의3 신설)

다.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93조제1항제5호의3 및 제151조의2제2호 신설).

라.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제153조제2항제2호 신설).

마.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함(제154조제9호 신설).

6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개정 `19.12.10. 시행 `20.6.11. ]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 044-201-3749

### ■ 개정이유

- 도시에서 공원녹지가 원활하게 확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시공원 조성사업 등을 시범사업으로 지정·지원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을 추가하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4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개정이유**

-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을 받지 않았으나 경영악화 등을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폐업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고,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등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두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6934호, 2020. 2. 4. 공포, 5. 5. 시행 및 법률 제16780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절차 및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금의 지급 신청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축산업을 영위하던 자에 대한 폐업지원금의 지급(제11조의2 신설)
  - 1)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기 전부터 축산업을 영위하던 자가 방역 시설의 설치로 인한 비용 증가로 경영이 악화되거나 인근 지역의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의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여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업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지원금의 지급대상 가축을 돼지로 정함.
- 나. 폐업지원금의 산출방법(제11조의3 신설)

- 1) 폐업지원금 금액을 가축의 연간 출하 마릿수에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을 곱한 연간 순수익액의 2년분으로 하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사육형태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산출방법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다. 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 및 시행기간(제11조의4 신설)

- 1)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에 가축사육 현황 및 폐업지원금의 산출내역을 첨부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폐업지원금은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하도록 함.

라.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금의 지급 신청 등(제11조의5 신설)

- 1) 가축전염병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 및 지원 대상인 영업손실의 범위를 사육제한 명령으로 가축사육시설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검사·주사 등으로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 및 살처분한 가축 마릿수의 평가액 등으로 정함.
- 2) 가축전염병 피해자 등이 피해 보상요구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피해 사실확인서를 첨부·제출하여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개최를 요청하도록 함.

마. 매몰지의 관리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 등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 1) 매몰지의 관리 및 주변 환경조사 등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4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며,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7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

## ■ 개정이유

- 최근 주차장 내 경사진 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주차장의 안전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함(제3조제2항 신설).
- 나. 주차장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 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1항 및 제2항).
- 다.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함(제6조제3항 신설).



1

##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자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시행 `20.05.13.]



### ■ 제정이유

○ 제주지역에는 섬이라는 물리적 환경과 지정학적 여건에 의해 다양한 역사적 사건이 발생했었음. 도민들은 사건의 아픔을 극복하고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과정에서 평화와 상생의 가치를 창출하여 승화시켰음.

제주도내에서는 역사적 사건과 재해·재난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다크 투어리즘 현장을 찾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음. 특히 항몽 유적지를 비롯해 이재수의 난, 항일운동, 4·사건, 한국전쟁 유적 등을 방문하는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제주의 차별화된 관광상품으로 정착하고 있음.

이처럼 지역의 어두운 과거를 자원으로 활용하여 미래에 교훈으로 삼는 다크 투어리즘 상품 개발 및 육성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음.

현재 관련 사업에 대해 일부 지원하는 등의 행정 행위는 발생하고 있으나 좀 더 체계적으로 다크 투어리즘 상품을 개발하고 육성시키는 작업이 요구됨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책무에 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기본계획 수립, 관광지 지정육성에 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안 제6조~제9조)

라. 해설사 배치 및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 ■ 제정이유

- 「소비자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과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소비자 권익증진 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등에 관한 규정(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나. 울산광역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 다. 울산광역시 소비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 라. 소비자단체의 업무, 등록, 등록의 취소 및 지원(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 마. 취약계층의 보호 및 소비자모니터 자원봉사자 모집·지원(안 제26조 및 제27조)



### 제정이유

- 전라북도 연안 해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해양쓰레기의 발생 억제와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북도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청정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 주요내용

- 가.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수거 및 처리에 대한 도지사 및 주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도지사는 전라북도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함(안 제4조)
- 다. 도지사는 도내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의 발생원인, 발생량, 발생종류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음(안 제5조)
- 라. 도지사는 해양쓰레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및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행정적 지원도 할 수 있음(안 제6조)
- 마. 도지사는 해양쓰레기의 발생 억제 및 수거를 위해 바다환경지킴이를 위촉할 수 있으며,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안 제7조)
- 바. 도지사는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하여 전라북도 해양쓰레기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10조 ~ 제16조)
- 사. 도지사는 해양쓰레기의 발생 억제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안 제17조)

## 4

# 전라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시행 `20.05.29.]



### ■ 제정이유

- 전라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도서지역의 해상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도서 관광 활성화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가. 여객선 운임 지원금의 수혜대상을 전라북도민으로 하고 도민 중 도서민에 대해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타 시·도민에 대해서도 여객선 운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 나. 여객선 운임 지원금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지원 운임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다. 여객선 운임 지원금의 정산 방식 및 지원절차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라. 운임 지원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여객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마. 지원금 환수 및 부정승선 방지를 위한 제반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협조하는 등 사후관리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 바. 운임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부정승선에 대한 제재사항과 변경사항을 여객터미널 및 여객선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홍보와 주의의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1

조례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42조 등 관련)

[의견20-0101, 충청북도교육청]

■ 질의요지

- 가.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 나.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교육감이 위임하려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 가. 이 사안의 경우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나. 이 사안의 경우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교육감이 교육장에게 위임하려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가 어떠한 내용의 사무인지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 이유

###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제1항)하면서,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하 “충청북도교육청조례안”이라 함)을 입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의 효력이 있는 법규범은 하위의 법규범 보다 우월한 효력을 가지며 하위 법규범은 상위 법규범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개정할 수 있는바, 조례에서 규율하려는 내용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에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례와 법령의 목적이 다르고 조례의 내용이 법령의 입법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조례의 목적과 취지가 법령의 목적과 취지와 같은 경우에도 법령 규정의 취지가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인 규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해석될 때에는 조례에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이러한 조례 규정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에서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과 다른 내용을 규정할 수 없고, 만약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위 법령과 다른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면 이는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려는 취지로서 조례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것은 상위 법령에 조례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상위 법령을 우선 적용하겠다는 취지인바 조례 규정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상위 법령만 적용되므로 그러한 내용을 규정할 실익이 없고,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위 법령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례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항은 동일한 수준의 법령 간에 법령의 적용과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조례에서 상위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입법 형식에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교육청조례안에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나. 질의 내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함) 제20조제15

호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서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충청북도교육청조례안 제9조에서는 “교육감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자치법 제34조에서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 교육지원청을 두고(제1항)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항) 같은 법 제35조에서는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조례로 정하는 사무(제2호)등을 위임받아 분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교육감의 권한 중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행정권한의 위임은 원(原) 권한자인 행정기관의 권한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만약 위임규정에서 위임 여부 및 위임하려는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규정하는 경우 위임과 관련한 법적 혼란 및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조례로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도 누가(주체), 누구에게(대상), 무엇(내용)을 위임하는지 및 위임 여부를 확정적·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충청북도교육청조례안에서 교육감이 교육장에게 위임하려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가 어떠한 내용의 사무인지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 14. (생략)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 17. (생략)

제26조(사무의 위임·위탁 등) ①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②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

####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3조(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사무의 위임) 교육감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에 드는 경비
3.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을 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인 화성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등 관련)

[의견20-0098, 경기도 화성시]

## ■ 의견

-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의 사항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인 화성시의 조례로 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 이유

-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 제52조의2제1항에서는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를 둔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된 분쟁을 제외한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제1호), 관리인·관리

위원의 선임·해임 등에 관한 분쟁(제2호),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제3호), 관리비의 징수·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제4호), 규약의 제정·개정 에 관한 분쟁(제5호) 등을 심의·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권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고(제52조의3제1항·제2항), 분쟁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여(제52조의8), 조정위원회의의 설치, 구성, 기능 및 조정의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집합건물법령에서 확정적·완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하자감정 등의 비용을 제외한 조정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시행령 제18조제6항)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합건물법상 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집합건물법이 2012년 12월 18일 법률 제115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2장의2(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9까지)에 신설된 것으로, 이는 집합건물에 관한 각종 분쟁을 소송 외의 방법으로 간이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써 집합건물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각 시·도 단위로 관계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집합건물 소유자, 분양자 및 시공사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 해결이 가능해지도록 하려는 취지였는바, 이는 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집합건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적 영역의 분쟁들을 시·군·구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시·도 단위에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심의·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집합건물분쟁에 관한 법률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집합건물분쟁에 관한 심의·조정

기능이 시·도 단위별로 통일성이 유지되도록 하려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집합건물법령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집합건물분쟁에 관한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로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화성시에서 조정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화성시의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집합건물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등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쟁(이하 “집합건물분쟁”이라 한다)을 심의·조정한다.

1.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한다.

2. 관리인·관리위원의 선임·해임 또는 관리단·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분쟁
3.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4. 관리비의 징수·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
5. 규약의 제정·개정에 관한 분쟁
6. 재건축과 관련된 철거, 비용분담 및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
7.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쟁

제52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집합건물분쟁에 관한 법률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법학 또는 조정·중재 등의 분쟁조정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건설공사, 하자감정 또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해당 시·도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가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조정위원회에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전원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 법 제52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1. 건물의 대지와 부속시설의 보존·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2. 규약에서 정한 전유부분의 사용방법에 관한 분쟁
3. 관리비 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의 징수·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
4.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한 계약에 관한 분쟁
5. 그 밖에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가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제17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

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도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 전원이 동의하면 제3항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정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법 제52조의9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조정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소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52조의3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위임한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② 소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조정절차)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3

국제행사 개최 지원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국제 행사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입법절차를 진행해도 되는지? (「행정절차법」 제41조 등 관련)

[의견20-0099, 경상남도 하동군]

## ■ 이유

- 법령이나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함)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정책결정자가 정책을 결정한 후 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자가 정책의 내용을 결정하여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그 내용이 권한 범위 내에 있고, 상위 법령에 반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진행하는데 별다른 제한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에서는 법령등에 대해 입법예고하여야 할 대상(제41조), 예고 방법(제42조), 예고 기간(제43조), 예고된 입법안에 대한 의견제출 및 처리(제44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입법예고를 하여야 할 시점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도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대해서 입법예고 방법이나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의 처리 등에 대해 규정하면서 그 외의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제20조)하고 있으나 입법예고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에서는 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의 등 협조를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 및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는 법령안의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다시 입법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에서 이러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입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법제업무 운영규정」 등을 참고하여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도 필요한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 내용을 기초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행사 개최계획의 사전 심사·조정·사후평가 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10억 원 이상의 국고 지원을 요청하는 국제행사 개최 계획의 사전 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국제행사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하면서(제4조), 같은 규정 제5조에서는 국제행사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으로 국제행사 개최준비·진행과정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협조·지원·점검 등에 관한 사항(제3호), 국제행사개최에 소요되는 시설·인력 및 채용대책(제4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10억 이상의 국고 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제행사의 규모나 행사 진행과 관련된 인력과 예산은 국제행사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후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하동군에서 제정하려는 조례안에 국제행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국제행사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후 확정된 내용을 기초로 조례안을 입안하여 입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고, 만약 국제행사의 개최를 위한 사전 준비 소요기간, 개최시기 등을 고려하여 국제행사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전에 조례안 입안 및 입법절차(입법예고 등)를 진행한다고 한다면 국제행사심의위원회의 최종 승인 결과에 의해 변경된 사항은 다시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른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하동군에서는 별도의 조례를 정하고 있지 않지만, 경상남도에서는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례에서는 다른 기관·부서간 협의 및 중앙 행정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그 절차를 거친 후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제6조제1항)하고 있는바 하동군 조례안과 관련된 국제행사가 경상남도와 하동군이 공동 개최하는 행사로 경상남도의 경우 국제행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완료 후 차(茶)엑스포 조직위원회 구성 및 지원을 위한 입법절차(입법예고 등)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등

### ○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5. (생략)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 ③ (생략)

④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

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생략)

제42조(예고방법) ①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법령안 입법예고) ① ~ ② (생략)

③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그 밖에 법령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0조(자치법규안 입법예고) ①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

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예고방법) ① 자치법규 입안 부서에서는 다른기관·부서간 협의 및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그 절차를 거친 후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설치) 10억원 이상의 국고 지원을 요청하는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심의·조정 및 국제행사의 사후평가 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소속하에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 2. (생략)

3. 국제행사 개최준비·진행과정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협조·지원·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국제행사개최에 소요되는 시설·인력 및 재원대책

5. (생략)

## 4

경주시의회가 경주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세출 중 지역개발사업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한 회계연도 내 총 사업비가 같은 회계연도 해당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경주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지(「경주시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관련)

[의견20-0114, 경상북도 경주시]

### 이유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지방자치법」에서 예산의 심의·확정권은 지방의회에(제39조제1항제2호), 예산안의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제127조제1항) 부여하여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기본적으로 예산안이 예산편성 기준 등에 관하여 직접 규율하고 있는 법령이나 조례에 반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례로 예산편성 기준 등을 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은 예산편성 기준 등에 관해 직접 규율하고 있는 조례가 있는 경우 그에 구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제1항)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 「지방세법」 제141조, 제1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지방세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입·세출에 관해 「지방재정법」 등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편성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주시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경주시조례안”이라 함)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경주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경주시 특별회계”라 함)의 세출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으로 원전의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 관한 사업(제1호)이나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과 환경개선사업(제2호) 등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에서는 시가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경주시 특별회계의 세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제7조 및 제8호에 따른 한 회계연도 내 사업비 총 규모가 당해 연도 세입예산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주시 조례안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경주시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에 대해 징수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방재사업, 지역균형발전 등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해당 지역자원시설세의 대부분이 지역개발사업 등에 지출되어 안전사업이나 환경사업 등 다른 원자력 관련 사업의 운영이 소홀해질 것을 우려하여 한 회계연도에 지역개발사업 등의 지출 한도를 제한하려

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해당 규정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지방예산 건전운용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 내 지역개발사업 등에 편성할 수 있는 경주시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의 상한을 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주시특별회계 세출사업의 종류는 경주시조례안에 의해 비로소 정해지는 것으로서 경주시의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경주시특별회계 세출사업의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39조제1항제1호), 경주시조례안에서 정하려는 상한의 범위 내에서 경주시장은 여전히 지역개발사업 등의 예산을 어느 정도로 편성할지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그 한도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 행사를 무의미하게 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예산편성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경주시의회가 경주시특별회계 세출 중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총 사업비가 당해연도 세입예산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하더라도, 그 상한이 경주시장이 예산편성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경주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등

###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 11. (생략)
- ② (생략)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 「지방세법」

####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 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생략)

## 1. 국내 현황

- 최근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인명이 희생(38명 사망)되면서 건설산업 안전관리 법제의 재검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2019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855명 중 건설업 분야의 사망자는 428명이다. 1999년 사고 사망자 통계가 시작된 이후, 건설산업에서 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좀처럼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전체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제조업 등 다른 분야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
- 2020년 1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 발주자의 책임(제67조) 및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의 처벌(제167조)을 강화하였으나,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실질적인 공사현장 안전관리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 여러 언론 및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이 보고서는 건설산업 안전관리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독일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입법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 2 독일 건설산업 안전관리 법령

### ① 법령체계

- 독일의 산업 안전·보건 법제는 기본법인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하위법인 각 업종별 법규명령(시행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행령은 「하역작업 안전규정」(Lastenhandhabungsverordnung), 「생화학물질 안전규정」(Biostoffverordnung) 등과 같이 주로 산업재해의 위험성이 큰 분야에 대

하여 제정되어 있다. 건설산업 분야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건설사업장 시행령」이 규율한다.

- 이와 별도로 사업장에서의 유해물질 안전관리에 관해서는 「화학물질관리법」(Chemi-kaliengesetz)과 「유해물질 관리 시행령」(Gefahrstoffeverordnung)이 적용된다.
- 영국이 「2007년 기업살인법」에 따라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둔다면, 독일은 각 산업별 안전관리 규정을 통해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평가된다.

## ② 독일 건설산업 안전관리 법제 주요 내용

- 사업자는 작업장에서 취업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가능한 위험요인을 확인, 평가해야 한다. 또한,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취업자의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포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산재위험이 최소화되도록 작업절차, 방식, 시간 등을 조직해야 한다.
  - 위험성 평가, 산업보건조치 및 그 효과에 대한 검토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업무형태별로 취업자 수에 맞추어 구비해야 한다.
- 특히, 건설현장에서 여러 사업자가 동시에 작업을 하는 경우, 즉 발주자가 사업을 분리 발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된다.
  - 안전·보건 업무를 통제·조율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정자(Koordinator) 선임
  - 연소,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건설공사장을 설치하기 전에 별도로 ‘안전보건계획’ 수립
- 독일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2중의 안전·보건 감독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감독관청 소속의 근로감독관과 「사회법전 제7권」에 따른 건설업 산재보험조합 소속의 기술감독관이 협력하여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폭넓은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 사업장, 영업소 등 출입, 시찰, 검사, 영업상 자료 열람
  - 사업시설, 작업도구, 개인보호장구 검사, 작업절차 및 공정 조사
  - 근로자의 건강상 위험 확인, 산업재해 및 근로로 인한 질병, 손해의 발생 원인 조사
  
- 기술감독관은 사업장의 안전감독과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건설업 산재보험조합은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재해예방규칙 제정, 안전보건 기술감독, 산재예방, 보상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의무적으로 일정 수 이상의 기술감독관을 고용한다.
  
- 근로감독관과 기술감독관은 모두 사용자의 안전관리 상태를 감독하고 취업자의 생명 및 건강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긴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위험한 작업수단(기계, 재료 등)의 사용중지 또는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사업주가 건설산업 안전관리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는 다음과 같다.
  - 「건설사업장 시행령」 위반(안전보건계획 미수립, 안전보건조정자 미선임 등) : 5,000유로 이하의 과태료
  - 감독관청의 명령(시정명령, 공사중지 명령 등) 위반 : 25,000 유로 이하의 과태료
  - 「건설사업장 시행령」을 위반하여 취업자의 생명 또는 건강을 위태롭게 하거나, 감독관청의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 건설업 산재보험조합이 제정한 「재해예방규칙」을 위반하거나, 기술감독관의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경우 : 10,000 유로 이하의 과태료

### 3. 시사점

- 2019년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2009~2018) 건설현장에서 4,811명이 사망하고, 234,037명이 재해 사고를 당했다. 사망 원인으로는 추락사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천물류창고 화재와 같이 대형화재로 인한 사망 사고 또한 과거와 유사한 형태로 반복 발생하고 있다.
-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을 두도록 하고(제15조~제20조), 고용노동부 소속의 근로감독관이 그 업무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제155조). 그러나 실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여부, 관련 서류 점검 외에 그 직무 수행의 적절성에 대한 확인 등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 또한, 2018년 이천 냉동물류창고 화재사고 후 건설현장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실행하는 경우,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제42조). 그러나 심사 결과 부적정 판정을 내리는 경우에도 공사중지 등 필요한 안전조치는 공단이 직접 내리지 못하고, 공단의 조치 요청서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3조).
- 독일에서 건설산업의 안전관리는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기본법인 「산업안전보건법」(Arbeitsschutzgesetz)과, 동법의 시행령으로서 건설산업의 재해 예방을 위하여 별도로 제정된 「건설사업장 시행령」(Baustellenverordnung)에 따라 규율된다.

- 또한,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사회법전 제7권」(SGB VII)에 따라 2중의 협력적 안전보건 감독체계가 운영된다.
  - 감독관청 소속의 근로감독관과 건설업 산재보험조합(BG BAU) 소속의 기술감독관이 합동으로 사업시설, 작업도구 및 개인보호장구를 검사하고, 작업절차 및 공정 조사 등을 수행한다.
  - 이들은 재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긴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중지 등 즉각적인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독일의 입법례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건설산업에서 재해사고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독일의 「건설사업장 시행령」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법 형태로 건설산업의 안전·보건을 위한 세부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 둘째,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의 수직적 감독체계를 유관기관의 협력적·수평적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하여, 사업자의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2중 또는 3중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셋째, 안전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에게 위험요인 발견 즉시 작업중지 등 강제수단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관련조치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를 신설하여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